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순규 의원(찬성자 20명)

나. 의안번호 : 제 1292호

다. 발의일자 : 2020. 2. 05

라. 회부일자 : 2020. 2. 12

## 2. 제안이유

고등학생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한편, 정부조직의 개편 및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등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3. 주요골자

가.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총리령’을 ‘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으로 개정함(안 제2조제3항 외 7개 조항)

나. 상위법령에서 장애에 대한 ‘등급’을 ‘정도’로 변경함에 따라 이를 반영함(안 제18조제1항제2호)

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에 따라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한편, 대학생에 대한 지급금액의 한도를 규정함(안 제19조제1항제1호, 제3호)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원안 참조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비용추계 등의 자료 : 원안참조

## 5. 검토의견

### ■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개정('17.7.26)되어 '국민안전처'에 속해있던 소방조직이 '소방청'으로 분리·개편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 일부를 정비하는 한편,
-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고등학생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기존에 의용소방대 자녀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급되던 장학금의 수혜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현행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 의용소방대 연혁 및 운영현황

- 의용소방대<sup>1)</sup>는 1954년 전국적으로 조직되었고 1958년에 「소방법」 제정으로 그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음.
- 서울시의 경우 1972년에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가 제정되었고 2005년에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음.
- 2019년도 기준 '서울시 의용소방대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소방서 및 안전센터별로 설치된 의용소방대는 총 194대 4,840명이

---

1) 의용소방대는 해당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자로 구성되는 비상근 소방대로서 주로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등을 수행하고 있음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음. ([표 1] 참조)

[표 1] 2019년 서울시 의용소방대 운영현황

구 분	내 용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54. 1월 전국적으로 의용소방대 조직</li> <li>○ 1958. 3월 소방법 제정 시 의용소방대 설치근거 명시</li> <li>○ 1972. 12. 20.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정</li> <li>○ 2008.1월 소방기본법에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치근거 신설</li> <li>○ 2014. 1. 2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제정 공포(7월29일 시행)</li> </ul>
조직운영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총 3,883대, 총 95,276명으로 구성 활동 중</li> <li>- 서울시 총 194대 4,840명으로 구성 활동(정원)/현원 4,455명</li> </ul> </li> <li>○ 출동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년 총 15,504회, 연인원 55,504명 출동하여 소방업무 보조</li> </ul> </li> <li>○ 봉사활동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년 총 2,657회, 연인원 12,003명 출동하여 봉사활동 전개</li> </ul> </li> </ul>
예산확보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성구분 : 시도 예산을 각 소방서별로 편성</li> <li>○ 예산현황 : 총 34억 7백만원(‘19년) 추경포함</li> </ul>

## ■ 주요골자별 의견

###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관련(안 제2조제3항 외 7개 조항)

- 안 제2조제3항 외 7개 조항은, 2014년 11월 19일 독립청으로 운영되던 소방방재청이 세월호 침몰 사고<sup>2)</sup>를 계기로 국민안전처<sup>3)</sup>산하 중앙소방본부로 되면서 ‘안전행정부령(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총리령’으로 개정되어 운영되었으나

2) 발생일: 2014년 4월 16일

3) 2014년 11월 19일 신설된 중앙행정기관임.

-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국민안전처가 행정안전부에 흡수·통합되면서 소방조직은 행정안전부 산하 소방청으로 독립하고 이에 따라 ‘총리령(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행정안전부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총리령’으로 명시되어 있는 인용 문구를 현행 법률체계에 맞춰 ‘법 시행규칙’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 다만, 법률이 2017년도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소방재난 본부는 상위법령 개정 시 조례개정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나. 장애 관련 용어의 변경(안 제18조제1항)

- 안 제18조제1항은,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에 대한 ‘등급’을 ‘정도’로 변경함<sup>4)</sup>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이는 기존에 장애인에게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된 등급을 부여하고,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하면서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의 목적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해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17. 12. 19, 시행 2019. 7. 1

다. 장학금 지원대상의 확대 관련(안 제19조제1항제1호, 제3호)

- 안 제19조제1항제1호와 제3호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나 「초·중등교육법」 개정(‘19.12.3)에 따라 무상교육이 확대<sup>5)</sup>되면서 지원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지원대상에 대학생까지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임. ([표 2] 참조)

[표 2] 개정안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장학금 지원) ① 시장은 소방재난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1. 지급대상자격: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u>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u></p> <p>2. 지급인원: 자녀 1명</p> <p>3. 지급금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에 따른 <u>자녀학비보조수당에 상당하는 금액</u></p> <p>② (생략)</p>	<p>제19조(장학금 지원) ①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1. 지급대상자격: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u>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u></p> <p>2. (현행과 같음)</p> <p>3. 지급금액: <u>고등학생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대학생은 고등학생 지급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급대상자격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사람」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도 포함시키고 있으며, 지급금액은 대학생

5)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실시된 무상교육이 2020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2021년에는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됨.

이라 하여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고등학생 지급금액의 120 퍼센트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 본 제도의 당초 취지를 살며보면, 소방재난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의용소방대원들을 대상으로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운영되던 제도임을 감안할 때 무상교육 확대에 따라 수요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학생들을 포함시켜 당초 취지를 살려 나간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 여겨짐.